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목차

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 총칙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4. 사용절차

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

6.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7.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의 방법과 절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a.k.a. 혁신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

Q1. 갑자기 왜?(=제정 배경)

Q2. 적용 범위는?

Q3. 구체적으로 지역사업평가단에서 맡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법률(규정) 따라야 하는지?

Q4.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약 과제부터 적용되는지?

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 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배경

부처별 관리규정이 산재되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 심화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법률에 우선 적용하지 못하여 규범력에 한계 존재

구조

총 5개 장, 41개 조. 하위 법령 및 규정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9개 행정규칙

적용 범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 가능

주요 용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활동, 기술료를 정의하여 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규정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비 사용,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도 적용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기술료 징수,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등은 기존 규정을 적용

부처별 제도 운영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의 범위에서 법령 등이나 시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법령 등의 제·개정 시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 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구조

총 5개 장, 41개 조. 하위 법령 및 규정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9개 행정규칙

시행령

5개 장 67조로 구성되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

✓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의 조항을 규정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 2)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3)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고시)
- 4)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규정(예정)
- 5) 연구지원기준(예정)
- 6)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 7)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규정(예정)
- 8)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 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1 총칙

규정의 취지 및 주요 특징

부처별·사업별로 운영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기본 취지입니다.

기본방향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존 규정을 가급적 유지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는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명시적 규정없이 운영되는 사항은 실제 부처에서 관리방식 최대한 반영

기관 유형별 차별화

✓ 연구개발기관의 유형별 사용기준 차별화

인건비 행정 부담 경감

✓ 참여율 용어를 실제 의미에 맞게 인건비계상률로 변경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 입력주기 확대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의무기관 확대
학생연구자 실지급 인건비 확대

연구장비 및 재료 도입기한 완화

✓ 연구수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장비 및 재료의 도입기한 완화

1 총칙

규정 전·후 비교

구분		전(~2020년)	후(2021년~)
규정 통일		부처·사업별로 기준 운영	범부처 통일 기준 운영
규정 방식		연구비 세목별로 규정	연구기관 유형별 구분 후 연구비 세목별로 규정
인 건 비	기관단위 관리 가능 여부	불명확	비영리-가능, 영리-불가능
	참여율 용어	참여율	인건비계상률
	인건비계상률 관리 단위	불명확	정부출연기관-연단위, 그외 기관-월 단위
	인건비계상률 입력 주기	매월 입력	기관의 회계연도 내 1회 입력
	참여율 130% 허용 기관	정부출연기관, 일부부처-전문생산기술연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
	현금지급 가능 영리기관	중소기업 신규인력 지식서비스분야 연구개발서비스업 기타 부처 인정 경우	중소 및 중견기업의 신규인력과 기존인력 대기업의 신규와 기존인력 중 부처 인정 경우 연구성과 국유의 경우 기타 부처 인정 경우
	영리기관 현금지급비율	신설	(원칙) 연구비 현금의 50% 이내 (부처인정시) 50% 초과 가능

1 총칙

규정 전·후 비교

구분		전(~2020년)	후(2021년~)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연구자 보유기관
	참여율 산정재원	불명확	대학재정지원사업 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등 인건비, 창업소득, 기타 단기소득 제외
✓	장비 도입 기한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원칙)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상황)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장비구축과제) 과제종료 전까지
✓	재료 도입 기한	과제종료 전까지 (일부 부처)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과제종료 전까지
✓	SW 사용료 기한	과제종료 전까지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가능여부	불명확	비영리-가능, 영리-불가능

연구비 사용시점

-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타 계정으로 이체되는 시점을 의미
예) 인건비 - 참여연구자 개인계정, 재료비 - 재료 판매업체의 계정,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정 등
- 연구비카드 사용시점은 연구비 사용시점이 아니며, 연구비 사용을 위한 절차 중 하나에 해당함

1 총칙

용어의 정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개발기관

법 2조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과제비, 사업비, 연구비 X

영리기관

영 19조1항 각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

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통합Ezbaro(한국연구재단), 통합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간접비비율

간접비비율=간접비/수정직접비

수정직접비=직접비-현물부담액-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정산

연구개발과제의 해약, 종료시 연구개발비가 법 13조3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법 13조4항에 따른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학생연구자

학생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근로계약 체결한 휴학생 포함)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첫학기 시작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1 총칙

정산기준

연구개발비가 아래의 부담기준부터 이자의 사용용도까지 모두 부합하는 경우 적정사용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영 제19조 제1항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영 제20조 제1항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사용기준 제5조 ~ 제72조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기준 제73조 ~ 제74조

이자의 사용용도

사용기준 제75조 ~ 제78조

경과조치

2020년 종료 & 2021년 정산 과제

종전규정 적용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인 과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수, 2020.12.31까지 집행분은 종전규정

다년도 과제인데 1,2차년도 정산을 이미 실시한 과제

정산안한 3차년도에 대해서만 정산 가능

1 총칙

기관별 책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공통책무로서 **연구개발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과도한 규정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포함)은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함
-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인건비 사용용도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근접지원인력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학생연구자

1. 대학 등의 연구개발기관 소속 학생연구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운영하는 학·연협동과정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대전제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1. 연구재료 구입비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자체제작과 외부제작 모두 포함)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3. 회의비

4. 출장비

5. 소프트웨어 활용비

6. 연구실운영비

7. 연구인력 지원비

8. 종합사업관리비

9. 그 밖의 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필요 비용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장 임차료, 숙박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의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국내외 출장비용(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비용 포함)

SW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SW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야근(특근)식대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및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밖의 비용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의 사용용도

연구수당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19조4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4조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4조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성됩니다.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기타의 인력지원비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연구개발과제 미참여기간동안의 비용)

- 1)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동안의 급여
- 2)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3) 일시적 연구중단기간동안의 급여
- 4)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급여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1.기관 공통비용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사업단 운영비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비용

3.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1)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4.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2조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연구보안관리비

1)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2)기술자료 임치관련 비용
3)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4)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연구활동지원금

학술용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특정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비용 등 포함)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1. 과학문화활동비

- 1)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2)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3) 홍보전문가 양성
- 4)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1)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2)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3) 표준활동에 필요한 비용
- 4)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공통사용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연구기관별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이 종합하여 제출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항목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총액만 작성하고 항목별 내역은 작성 불필요(연구시설·장비는 내역 작성)

연구개발비 지급방식 및 지급대행

통합Ezbaro(한국연구재단): 비영리기관-일괄지급, 영리기관-건별지급
통합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모든기관-건별지급

연구개발비 공통계상기준

직접비: 해당 과제수행에 필요한 금액 계상
간접비: 여러 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금액 계상
그 밖의 경우 :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 가능(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 금지)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비용

환급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비용, 기관 내부거래, 계열사간 거래,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간 거래비용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비용

1. 환급가능 관세, 부가가치세

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3. 중복계상 비용

- 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 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 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중복계상 인건비·학생인건비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연구개발기관내 및 기관간 비용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제외항목(=계상 가능 비용)

- 1) 대학이 같은 대학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 비용
- 2)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특정한 경우
- 3) 정부출연 연구개발기관과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6. 인적·물적구분이 불명확한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비용

연구개발기관내 및 기관간 비용

가능항목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가능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불가**

- 1)대학이 같은 대학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 비용
- 2)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중 특정한 경우
- 3)정부출연 연구개발기관과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1)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2)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 단독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상기 이외의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한 비용
- 3)비영리기관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는 비용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계상기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입증기준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검수기준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함

사용일기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함

사용실적보고일까지 사용가능

- 1)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2)연구수당
- 3)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SW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사용형태기준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함(다만, 외국물품 수입 등 연구비카드·계좌이체 사용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현금사용 가능)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현물계상기준

현물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함

승인기준

사전승인 ⇒ 협약변경 후 사용하여야 함

- 1.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 2.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 3.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ZEUS를 통해 무상 이전 받으려는 경우 제외)
- 4.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 과제의 경우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1억원기준

1억원이상(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천만원기준

3천원이상 또는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ZEUS'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야 함

구입·설치·임차기한요건

- 1.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 2.재난,재해,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중대한 사유 발생: 종료일 1개월전
- 3.기타: **종료일 2개월전**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하여야 함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한도=**직접비의 40%**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회의비

연구개발기관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는 식대 계상 불가(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은 가능)
증빙요건: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영수증
단, 10만원이하의 회의비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대신 가능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이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SW활용비

SW사용계약 체결기한(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
1.기관 기본사업: 종료일
2.재난,재해,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중대한 사유 발생: 종료일 1개월전
3.기타: **종료일 2개월전**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SW사용계약기간의 경우 최소단위 소명하면 계약금액 전부 계상 가능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인력 지원비로 **계상불가**한 비용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계상 가능)
2. 참여연구자의 종신학회비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4.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5. 관련법에 따라 환급가능한 교육비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DoOne 노원회계법인
Accounting Corporation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수당 사용기준

연구수당 한도

한도=수정인건비의 20%

수정인건비

- 1)인건비(현물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
- 2)학생인건비
- 3)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 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미지급인건비계상률 입력 필요)

연구수당 증액 금지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연구수당 계상 단, 원래계획상의 연구수당금액보다 **증액계상 금지**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연구수당 지급기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평가 등 합리적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인당 지급한도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명에게 연구수당의 70% 초과 지급 금지

연구수당 불인정

- 1.정산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금액
- 2.연구수당집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금액
(연구수당지급액X(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

연구수당집행비율

=연구수당지급액/연구수당계상액

직접비사용비율

=직접비사용액/직접비계상액, 현물은 제외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탁연구개발비 한도

한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의 40%

위탁연구개발비 증액

원래계획보다 20%이상 증액하여 계상 시 사전 승인 필요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증명자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사용

이체(또는 계정대체)된 금액 사용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따라야 함

사용실적보고·정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간접비 사용기준

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대학만 계상 가능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 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 등은 인건비총액의 1% 이상) 계상하여야 함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만 계상할 수 있음

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가능함(최장 10년까지 계상가능)

연구개발비사용액 부당회수 등 금지

정의

임직원 또는 참여연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

인건비부당회수 금지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2.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사용용도 위반행위 간주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는 법 13조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봄

4 사용절차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일괄지급대상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그 밖의 경우: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대상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그 밖의 경우: 사용하기 전

일괄지급대상과제의 인건비

다음 기준에 따라 입력할 수 있음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연구수당 등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 1)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2)연구수당
- 3)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SW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통합Ezbaro

4 사용절차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하루

협약체결·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연구개발기관 시작일부터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자체재원 활용 인정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존

전/후 비교

구분	전(~2020년)	후(2021년~)
사용내역 보고 방법	신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연구개발 시작일	신설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날까지
연구비 지급지연시 자체재원 사용	신설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 사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
증명자료 보관 방법	영수증서에 대하여만 전자적 보관 명시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가능

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

사전승인

사전승인 대상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2. 연도별 정부지원금액 또는 기관부담금액 변경(현금과 현물의 변경 포함)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4.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변경

5.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1)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2)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3)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ZEUS를 통해 무상 이전 받으려는 경우 제외)

4)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 과제의 경우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 이상 증액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8. 해당 단계의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

6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연구개발기간동안의 이자

사용가능 용도

다음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

5.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

6.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연구개발기간 종료후 이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
다만, 위 4,5,6은 사용가능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정부지원금이자 = 총 연구개발비 이자 X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 중 현금)

7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의 방법과 절차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1. 정부지원 금액
2.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3. 그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금액
4.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간접비 등 인정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확인 필요!**
- 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다음의 경우 적정 사용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음
1. 비영리법인에 지급된 간접비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
 3.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연구시설·장비비

협약해약시 간접비 잔액의 산출

1.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max(A, B)$
A=간접비 월할계산 금액(말월산입)
B=간접비총액X(간접비집행비율-직접비집행비율)
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B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1.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해야 함
 3. 현물부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현물부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봄

7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의 방법과 절차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1. 정산 실시 전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회수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수하여야 하고, 회수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2.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회수액

직접비 사용 잔액

+ 간접비 사용 잔액(협약해약시 간접비 사용잔액, 공기업 이외 기업의 간접비 사용잔액)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액

+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과제의 간접비총액X(간접비집행비율-직접비집행비율)

= 연구개발비 회수 대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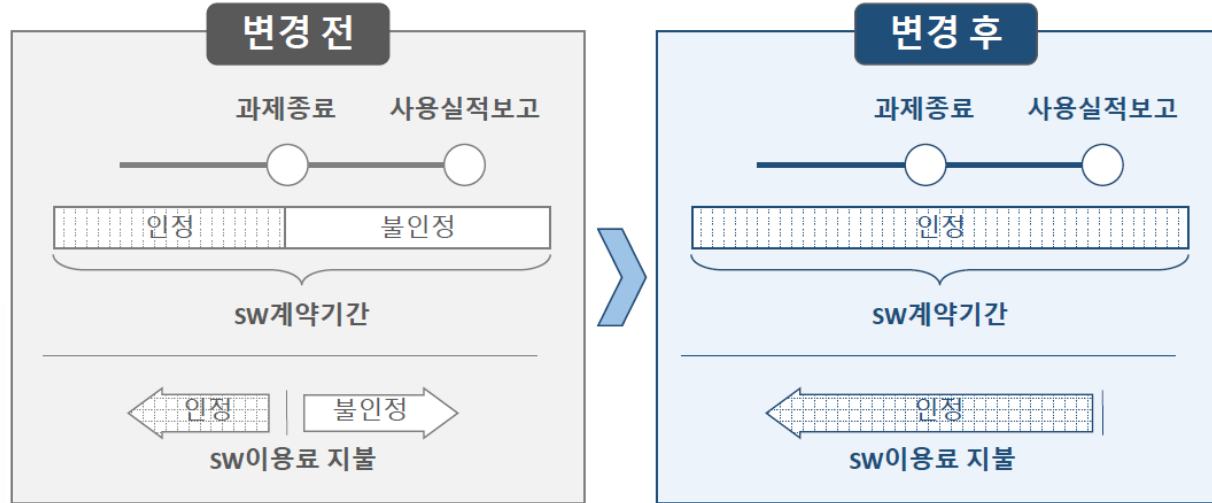
X 정부지원금 비율

+ 현물부족 부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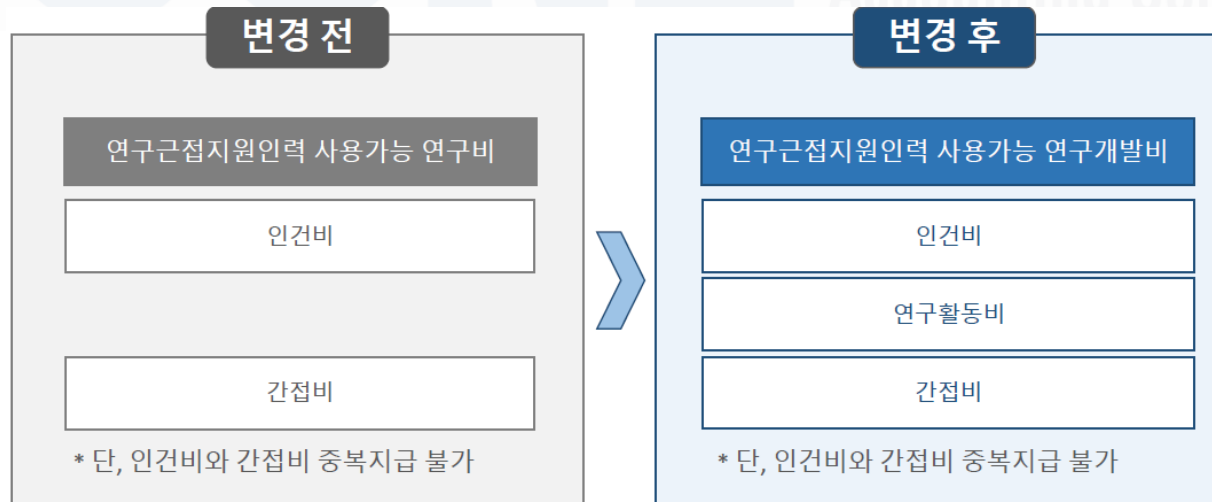
= 총 연구개발비 회수액

+ 중요 사항 요약_국가연구개발혁신법

1. SW이용료: **전제 > 과제 종료 2개월(긴급상황시 1개월) 전까지 구입**



2.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 가능, 연구수당은 여전히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_개정 유의사항

[별표 3] 사업비 산정 기준

****'R&D 사업의 경우'와 '비R&D사업의 경우'로 나누어 명시**

1. R&D 사업의 경우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 개념 도입(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영리기관의 경우에만 현물 계상 가능) < 비R&D 없음
- 외부인건비 개념 비R&D와 상이(R&D: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기업,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의 정규직원 계상 불가)

<연구시설장비비>

- 해당 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함+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협약계약서에 반영된 후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구입 가능
 - >> (비R&D: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를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집행 인정)
- VAT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제출
- VAT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제출
- VAT포함 1억원 이상: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별표7)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

← 혁신법과 상충

*[별표 7]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R&D 사업의 경우_열거 >> 비R&D 사업의 경우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R&D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_개정 유의사항

유의사항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운영비 << 비R&D는 연추비 있음
 - 여비 포함한 개념이며, 직접비(현금+현물) 10% 이하로 산정<< 산혁규정과 상이
 - 회의비: 다과, 식대 -> 1인당 1식 3만원 이내
 - (별표7)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필요(VAT포함 10만원 이하는 예외)
 - 초과 근무 식대: 1인당 1일 1만원 이내

<연구수당>

- (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중소중견은 최소 10%이상, 타용도 변경 불가)
- (별표7)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_협약 변경

[별표 7]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_2. R&D 사업의 경우_2) 전용기준

~에서 \ ~로	내부기존 인건비	신규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시설장 비비 및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내부기존인건비		자체변경	승인	자체변경	X	X	X
신규인건비	X		X	X	X	X	X
외부인건비	승인	자체변경		자체변경	X	X	X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X	승인	X		승인	X	영리,승인
연구활동비	X	자체변경	X	자체변경		X	영리,승인
연구수당	X	비영리, 자체변경	X	비영리, 자체변경	비영리, 자체변경		X
간접비	X	자체변경	X	자체변경	자체변경	X	

3. 비R&D 사업의 경우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R&D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Always Thanks for your interest toward ...

